

21세기 지식사회에 대응한 특허 정보 정책

특허는 개인 및 기업에 있어 국경을 초월한 재산권 형성의 필수

발명가나 일부 기업들에게만 관심이 있던 특허는 최근에 들어 인터넷붐을 타고 비즈니스모델이 특허의 논란이 되면서 일반인에게까지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수면 위로 상승한 세계적인 이슈인 체세포 복제 기술은 술한 뉴스거리를 생산하며 지속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유념해야 할 점은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도 특허에 대한 무지로 재산권형성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 뒤늦게 특허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등을 보더라도 현대 기술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기술개발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은 특허법에 대한 숙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편집자주>

특허청 유전공학과장 이성우

1. 21세기 지식기반사회와 지식재산권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지식기반사회(Knowledge-based society)라고들 한다. 따라서 창조적 지식, 정보가 경쟁력 원천으로 작용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최근 들어 벤처 열풍을 타고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이 개발되고 개발된 기술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특허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광통신, 생명공학 등의 원천기술 개발 및 상업화가 현재의 미국 신경제 호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기술발전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려는 고전적인 논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정보와 지식은 생산요소 또는 상품으로 등장해 경제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 유통되고 있다. 즉 지식 그 자체가 상품이요 정보 자체가 자산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세계 각국은 국경 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로 돌입했다.

자국의 지식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과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자국의 미래는 바로 이러한 지식기반 사회의 기초를 다지는 일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과히 지식과 정보의 혁명이라고 집약해 말할 수 있다.

차 례

1. 21세기 지식기반사회와 지식재산권
2.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3. 특허청의 특허정보 정책 방향
4. 특허 및 특허정보 활용사례

2 1세기 지식기반사회와 지식재산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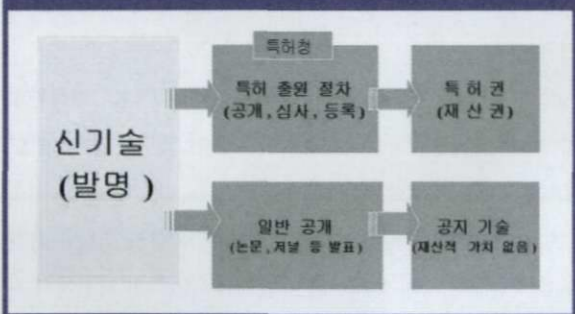
이미 지적 재산권은 국제 통상마찰의 핫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국가간의 마찰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부가가치의 원천기술이나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은 개도국의 추격을 견제하고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을 통상무기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추세로 본다면 지식기반이 미약한 국가는 이미 미래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채 지식의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는 이미 WTO 지식재산권 협정(TRIPs) 등을 통해 통상압력의 수단으로 고착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적권은 한 국가의 산업발전 및 경쟁력을 결정짓는 산업자본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산업이 고도로 발전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모두 지식재산권보호제도를 조기에 도입 정착시켰으며, 특히 산업재산권을 많이 출원하거나 확보한 국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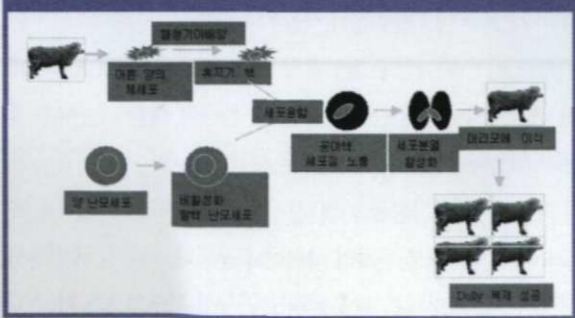
세계 최초의 특허법은 1474년의 베네치아 특허법이며 영국은 1624년, 미국은 1790년, 프랑스는 1791년, 독일은 1842년, 일본 1885년에 이미 특허법이 만들어 졌다. 물론 초기에는 오늘날과 같은 복잡하고 미묘하거나 그 자체로서의 상품성이나 경쟁력의 요소로 보고 출발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오랜 전통임을 알 수 있다. <그림1>

신기술발명의 지식재산권화 과정 <그림1>



복제양돌리 특허

<그림2>



영국특허 제2318792호 (2000. 1.18)

생식세포가 아닌 성장 및 분화가 끝난 체세포를 다시 분열시켜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를 생산하는 기술 <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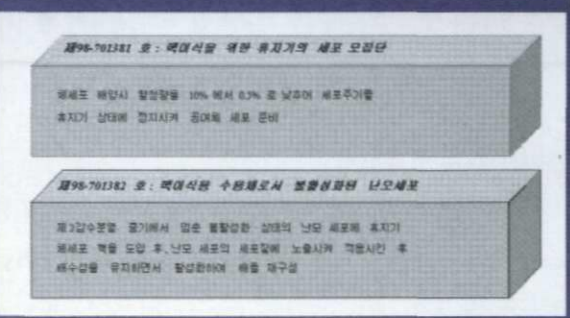
특허 출원

- ▶ 영국로슬린 연구소는 95년 8월 동물복제기술 개발(특허 출원)
- ▶ 97년 2월 암양의 체세포를 이용 유전적으로 동일한 '돌리'를 생산함으로써 최초의 동물복제 성공
- ▶ 2000년 3월 PPL Therapeutic사는 돼지 복제에 성공(특허 기술 상업화)
- ▶ 미국의 제논사와 간세포를 이용한 인공장기개발 추진(기술 이전)
- ▶ 2000년 1월 로슬린의 동물복제관련 기술이 영국에서 특허를 획득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100여개국에 특허 출원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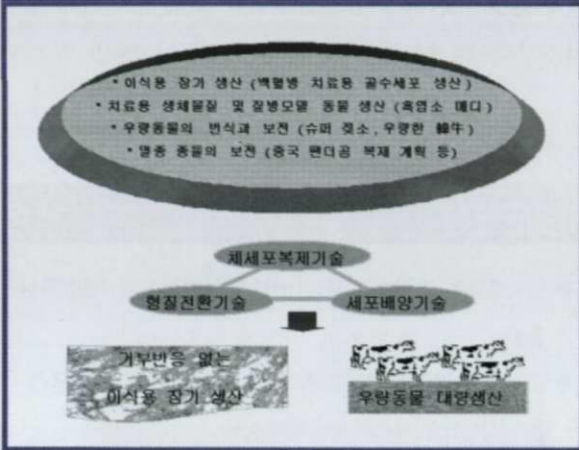
- 영국은 복제양 돌리에 대한 특허로 향후 10억불의 로열티 수입과 인공장기 생산 등 관련 산업의 선두에 서게 되었다. 또한 최근 영국은 인간 배아세포에 대한 복제를 허용해 특허 적용으로 인한 수입의 극대화를 피하고 있다.

신기술 개발은 개발 그 자체뿐만 아니라 특허권 획득으로 무한한 재산적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복제양 '돌리'의 기술개발과 특허출원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특허 출원<그림3>



동물 복제 기술의 응용분야<그림4>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동물 복제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해 잠재적 가치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응용이 가능한 분야를 들면 무엇보다 인간의 질병과 관련한 분야를 들 수 있고 다음이 식량자원, 멸종 동식물의 보존 등 다양하다. 물론 인류를 위한 공공적인 성격의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막대한 수익을 가져오는 기술임에는 틀림없다.

질병치료와 관련한 의료분야는 이식용 장기 생산, 백혈병 치료를 위한 골수 세포생산 등에 적용이 가능하며 이미 그 응용기술은 상당한 진척을 이루고 있다. 또한 동물을 이용한 치료용 생체물질 생산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량형질의 동물을 복제해 식량난 해결이 가능하며 이같은 경우는 식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식물의 경우 특허 분야가 다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직은 관련 기술의 특허신청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밖에 지구 환경의 변화로 인한 희귀 동식물의 멸종을 복제기술을 통해 다량 생산이 가능해져 멸종을 막는데 공헌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같은 것의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팬더곰 복제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지식재산권은 일반적인 재산권처럼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을 가지므로 자산적 가치가 막대하다. 잘 알려져 있는 코카콜라의 경우를 보자.

- ▶ 코카콜라의 브랜드가치(99. 8월 현재) : 838.5억달러
- ▶ 코카콜라 주식 시가 총액의 60%, 전체 유형자산의 15배
- ▶ 스탠포드 대학은 유전자 재조합기술 특허 하나로 2억5천만불 로열티 수입을 벌어들임

지식재산권은 권리자가 타인에 대해 실시 사용권을 설정하거나 권리 자체의 양도를 통해 거액의 로열티나 판매수입을 얻을 수 있다.(특허료의 고액화) 그 예는 코닥사가 폴라로이드사(미국)에게 9억달러의로열티 제공한 것과 미놀타사가 하니웰사(미국)에게 1억3천만달러 로열티 제공한 것 등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재산으로서 세계적으로 쉽게 전파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급속한 정보, 통신 및 교통의 발달로 특허, 상표의 국가간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 그 예로 소니, 말보르, 코닥 등 세계적인 유명브랜드가 각 국에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때문에 지식재산권은 자국 내에서만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재산권의 범주에 들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지구촌화, 세계화로 각 국가간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기술제휴, 합작, 기술 이전 등의 형태로 협력기반이 조성되고 있으며 확산 추세에 있다.

이런 다양한 흐름들을 분석해 본 결과 국경을 초월한 권리 보호의 필요성 강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국의 지적 재산권 관리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외국기업의 국내 기술이전과 직접투자 유도

최근 인간 게놈연구 산업화의 핵심기술인 DNA Chip에 대한 선진국의 특허출원이 적은 것은 한국에 대한 기술이전 및 투자 의욕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앞선 기술을 가진 선진국의 기술이전과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진기술을 뛰어넘는 기술 탄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분쟁의 사전 예방 수단

지식재산권은 적시에 권리화 할 경우 관련 분야에서 지식 재산권을 둘러싼 개인간, 기업간, 국가간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즉, 먼저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법적 조치 등을 통해 권리화를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후발주자들에게 기술에 대한 재산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 또한 시기적으로 분쟁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크로스 라이선스, 맞고소 등의 사전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

3. 특허청의 특허정보 정책 방향

특허청은 21C 지식정보화시대 도래에 부응하는 Cyber 특허청을 모토로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의 초석이 된다는 취지로 특허정보 정책을 짜고 있다. 특허청의 특허정보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특허행정혁신 종합대책의 본격 추진

-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특허행정
- 세계 제일의 심사 심판 수행
-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 협력 주도
- 사이버 특허청의 구축
- 고객감동의 행정 구현

○ 특허청의 특허정보 정책 방향

- 지식기반 사회화를 선도하는 특허행정
- 중소기업 지재권 갖기 운동의 전개
- 기술개발의 방향제시
- 특허기술의 활용 촉진
- 지식경영의 보급
- 국민생활과 함께하는 특허행정
- 발명을 숭상하는 국민의식의 정착
- 10만발명 꿈나무의 양성
- 지식재산권의 철저한 보호

○ 제1차 특허행정전산화 7개년 계획(92-98)

- 특허넷(KIPONET)시스템의 개발
 - 전자문서의 효력인정 등 관련법령 개정(98.9)
 - 온라인 출원비율 : 99년 12월(77%)
- 특실검색시스템의 구축
- 대민 대산업계 산업재산권 정보 보급체계 구축
 - 특허기술정보의 대민서비스를 위한 특허기술정보센터(KIPRIS) 설립(<http://www.kipris.or.kr>)

○ 제2차 특허행정 정보화 3개년 계획(99-2001)

- 안방출원시대 개막
 - 특허넷의 고도화를 위한 보완 및 확충
 - 민원인 중심의 특허행정 정보화서비스로 확대 및 다양화
 - 서류없는(Paperless) 사무환경 구현을 위한 특허일반행정시스템 구축
 - 심판서류 온라인 처리시스템 구축(2001년)
 - 특허넷 전자출원시범대학의 실시(99.12) : 50개 대학

- 특허디지털라이브러리 구축으로 특허정보 인프라 고도화
 - 소수의 지재권 정보 독점화에서 다수의 지재권 정보의 공유화를 위한 KIPRIS 무료 서비스 실시
 - 서비스 형태의 다양화(특허기술정보 분석시스템 구축, Patent Map 설치)
 - SGML(국제특허문서 표준)에 의한 전문(Full Text)의 자유검색 환경 제공
 - 국제조사 예비심사기관 지정에 발맞춘 DB의 확충
 - 생명공학분야의 염기서열에 대한 전산 검색환경의 구축
 - 심결문 판례 검색의 전산화

특허청의 특허정보 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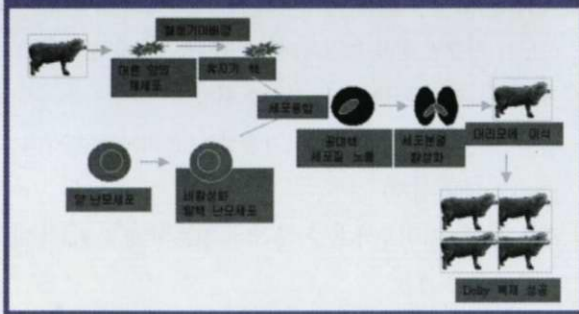
- KIPONET과 WIPONET의 연계를 통한 특허행정의 글로벌화
 - 특허행정 Global화에 대비한 정보시스템의 확충
 - PCT 국제조사 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업무처리 시스템 개발
 - 국제 전자출원시대에 대비한 외국특허청과의 연계시스템 개발 (특허3극과 대한민국)

- 출원의 진행상황 정보를 국제적으로 교환하기 위한 Global 정보시스템 개발
- WIPO-NET 디지털 라이브러리 구축 연계로 전세계 특허 DB활용

특허 및 특허정보 활용사례

- 기술이전과 특허
-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기술이전 및 특허획득 전략을 연구개발의 한 과정으로 인식
- 논문발표 이전에 특허출원 상시
- 돌리특허 출원일 : 1995. 8 돌리 탄생 및 공개 1997. 2
- 기술이전은 특허등 지재권으로 보호되어 이전
- 미국의 Bayh-Dole법 (1980) 시행으로 정부예산을 활용한 연구개발 결과의 기술이전이 획기적으로 촉진됨(사례 연구)
- 한국도 1999. 12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스텐퍼드 대학의 연구개발과 기술이전<그림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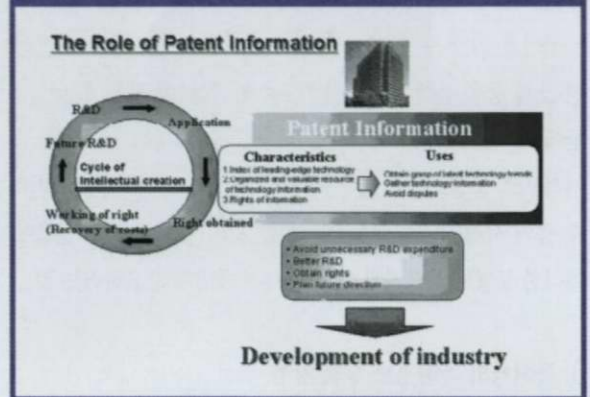
대덕단지 기술이전협의회 발족 (00.6.7)

- 기술의 이전, 교류 및 판매의 활성화를 통한 기술개발의 산업화 촉진
-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기술 마케팅, 상용화 촉진 등을 통하여 이전기술의 고부가가치 창출
- 관련 기관간 기술이전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정보제공
- 기타

기업에 있어서 산업재산권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경쟁사나 경쟁국의 최신 특허 검색 및 부실특허 견제를 통

한 대응책 중요

기술개발과 상업화에 있어서 특허정보의 역할<그림6>



기업은 신기술개발로 경쟁력 우위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개발된 기술은 특허를 통한 재산권 형성으로 이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기업에 있어서 기술투자에 쏟는 투자는 기업의 미래와 직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기술 개발이 제대로 된 자산으로 남기 위해서는 경쟁사 및 경쟁국의 관련 기술 특허 정보에 민감해야 하며 경쟁사의 부실특허 견제를 통한 자사의 기술에 대한 재산권 수호는 기업들이 명심해야 할 또 하나의 사안이다.

기업에 있어서 산업재산권의 효율적 관리방안

안용귀 / 한라공조 기술관리팀장

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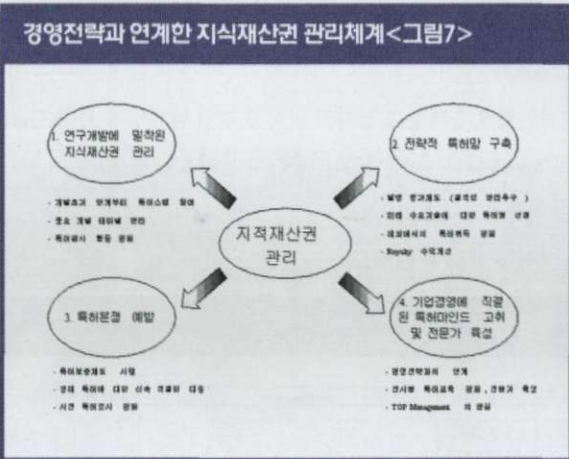
최근 지식재산권 분야를 둘러싼 환경은, 1) 기업활동의 고도화 및 개별화, 2) 기업활동의 다각화 및 국제화, 3) 지식재산권 제도의 국제적 조화와 이에 따른 제도운용상의 변화, 4) 새로운 보호대상의 출현에 따른 제도의 신설 및 개정, 5) 특허출원의 양에서 질로의 전환, 6) 미국을 진원으로 한 PRO-PATENT의 대두 등으로 눈부시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면서 기술축적을 도모해 온 국내기업은, 선진국 기업의 경쟁자 또는 잠재적 경쟁자로 부각되기 시작되면서, 이미 이들로부터의 특허공세에 시달리고 있거나, 그 공세대상으로서 노출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변화 추세와 선진국의 특허공세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본론

지식재산권 기본 관리방안

1. 타사특허 존중
- 1) 특허보증제도



① 정의

특허보증제도라함은 연구개발 ITEM에 대한 개발구상에서 양산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선행기술(특허)을 조사함으로써 경쟁사와의 특허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② 시행 단계별 시기 및 조치사항

<표1>

2) 경쟁사 특허 감시활동

- ① 중점관리 특허 설정 및 특허 보증단계에서 검출된 장애 특허
- ② 장애 특허에 대한 Profile 작성
 - 권리범위
 - Patent Family
 - 유사 관련 특허 내역
 - 기본 PM 작성
- ③ 장애특허 추적 감시

<표1>

구분	시기	조치내용
1단계	개발착수 최소 6개월 전	중요 선행기술 파악(장애특허 파악) 공백기술 파악 이용 가능 특허 파악 개발 아이디어 수집-개발 기본방향 및 컨셉 설정
2단계	시작품 제작시	시제품에 대한 특허 저촉여부 검토 고유특허 발굴 및 특허출원 장애 특허에 대한 회피설계
3단계	양산전	1, 2단계 조사과정 검증(2차 저촉여부 조사)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선행 기술 재조사 중점관리(장애특허) 설정 저촉여부 판정 및 검증(변리사 감장 등)
4단계	양산후	중점관리 특허 권리 변동사항 조사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선행특허 조사 및 저촉여부 분석

- 권리범위 변동 사항 Check
- 권리변동 사항 Check (취소/무효/이의신청/권리포기 여부)
- 출원국 변동사항 Check
- 경쟁시간 분쟁 발생 여부

3) 부실특허 견제 활동

① 부실특허 파악

부실특허라 함은 특허권을 행사할만한 기술이나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특허를 이르는데 이러한 부실특허가 있을 경우 관련기술개발 기업들이 입는 피해는 막대하다. 때문에 경쟁사의 부실특허를 막는 것도 기업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국가별 최신특허 검색을 통해 기취득된 특허에 대한 기술투자비용의 절약을 꾀하는 것도 중요하다.

② 권리취득 저지

- 정보제공(공개단계)
- 이의신청(공고단계)
- 무효심판(등록이후)

4) 경쟁사 특허 감시를 위한 조치

- ① 특허속보지 주기적 발행
 - 한국, 일본, 유럽, 미국 특허 최신 공개/등록분

- 주 또는 월 단위

② PM 작성/보완

- 신개발품에 대한 주제별 PM 작성
- 경쟁사별 기술/제품 개발 동향 파악을 위한 연속 PM 작성
- 양산제품 Bench Marking을 위한 양산품 PM 작성

2. 전략적 특허망 구축

1) 특허 아이디어 발굴

- ①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특허성 평가
- ② 선행기술 조사에 따른 공백 기술
- ③ 장해 특허에 대한 회피 기술
- ④ 신제품 적용 독창적 기술(Pilot 제품 Parts Audit시 특허 요원 참석)

2) 발명의 평가 및 기준

- ① 발명 발생시 : 제품적용 가능성, 특허성, 출원/Know-how 보호여부, 선행기술 존재여부
- ② 외국 출원시 : 해외시장 영향력, 권리 선점 여부
- ③ 심사 청구시 : 권리 선점 여부, 특허성, 제품 적용 가능성
- ④ 중간 처리시 : 보정 필요성에 따른 권리적 가치
- ⑤ 언급 납부시 : 실시 가능성, 기술적 가치
- ⑥ 실적 보상시 : 기술적/권리적/경제적 가치

3) 질적관리 지향

- ① 발명 신고서 사전 심사(방식심사, 중복출원, 단순 아이디어)
- ② 출원전 선행 특허 조사
- ③ 출원 확정전에 대한 등급 분류 및 명세서 검토/보완
- ④ 방어적 차원의 아이디어는 공개기보 이용(비용절감)

4) 전략특허 발굴 및 특허망 구축

- ① 기본발명에 대한 개량발명의 파생적 출원
- ② 주요 국가출원(해외법인 진출국, 주요 수출국, 향후 진출 예정국가)
- ③ 관련 발명의 후속 출원(물품, 방법, 생산기술)

④ 선행기술에 대비한 Claim 작성(Broad & Narrow Claim)

5) 자사특허 침해 감시

- ① 경쟁사 제품 Monitoring(연구개발 요원)
- ②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 거래선 활용
- ③ 협력 업체 활용

6) 취득권리의 관리 및 활용

① 특허관리 전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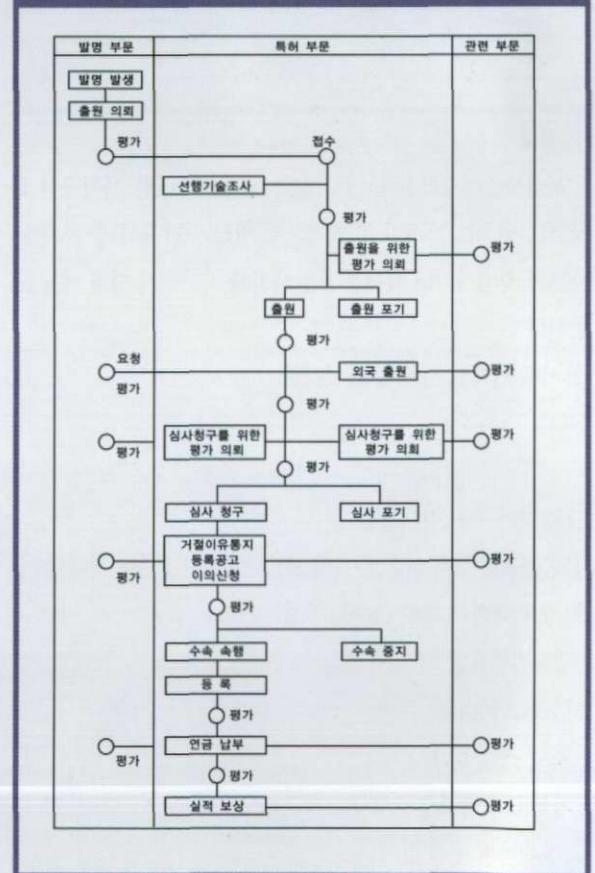
- 기출원건 이력관리(중복출원방지, 등록/중간사건일정 Check)

- 본인발명에 대한 발명자의 관심증축 및 타발명자 특허 참고
- Paperless화 추진(시간적, 공간적 관리효율 향상)

② 취득권리 홍보

- 기취득 권리 활용 유도

<표2>



6) 직무발명 보상

① 보상의 원칙

- 보상사안 발생시 보상금 즉시 지급
- 엄정한 평가에 의한 보상등급 결정
- 실적 관리지향시 특허등록 이전단계의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많은 특허아이디어가 제출될 수 있도록 유도
- 질적관리로의 전환시 특허등록 이후단계의 보상을 강화하여, 우수발명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행함으로써, 특허아이디어의 질적 수준 향상 유도

② 보상의 종류

- 특허 아이디어 보상
- 출원보상
- 등록보상
- 실시보상
- 처분보상
- 방어보상(정보제공, 이의신청, 무효심판)
- 연말포상(우수 발명자, 최다 출원자)
- 특별포상(직무발명유공자,)

3. 특허정보 관리

1) 紙매체 정보

- 한국, 일본, 유럽, 미국 등 주요국가에 대한 특허공보(자사 제품 관련 중요특허)
- 중요 장애특허에 대한 국가별 File Wrapper
- 주요 심판 및 판례정보
- 자사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특허 만을 기술분야별로 분류, 관리(특정 주제에 대한 특허소급 조사시 이용)

2) 전자공보

- 한국, 일본, 유럽, 미국 등 주요국가에 대한 특허 CD-ROM
- 기술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이나, 특정주제에 대한 관련 특허 발굴시 이용

3) 검색 DB

- 각국별 중요 핵심 특허에 대한 서지사항, 요약문, 권리변동 사항 입력

- 상용 프로그램 도입 또는 자사 개발 중, 기업특성에 맞도록 선택

4) Web 기반 특허 정보 검색 시스템

- 한국, 일본, 미국, 유럽 특허 전문야

4. 전사원 특허역량 강화

1) 전사원 교육

- ① 산업재산권 기초과정(신입 연구원 및 기술직 사원 대상)
- ② 산업재산권 향상과정(기존 연구원 및 기술직 사원 대상)
- ③ 특허정보 검색 교육(프로그램 신규도입 또는 VERSION UPGRADE시)
- ④ 특허 KEY-MAN 교육(각 연구실별로 선임된 연구원 대상)
- ⑤ 사내강사(특허요원) 및 사외강사 활용

2) 전담 요원 육성

- ① 국내외 연수
- ② 자체 세미나(판례연구, 기술검토 및 평가, 개정법 연구 등)

3) 기타

- ① 아이디어 연구회 참여, 지원
- ② 협력 업체 특허 관리 지원

결론

선진국에 비해 뒤늦게 연구개발 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국내기업 실정을 감안할 때, 당장 이들이 가진 원천기술이나 첨단기술에 비금갈 만한 신기술을 개발하여 선진기업과 대항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연구개발 계획 입안시부터, 선진기업의 선행특허를 철저히 조사하여 특허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함과 아울러, 연구개발단계 에서 발굴된 고유의 독자기술에 대한 전략적인 특허망을 구축함으로써, Royalty 수지 개선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지식재산권 관리방안이라고 생각한다. 